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30

제출년월일 : 1995.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농어촌 특산단지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상설.전시 판매함으로써 농어촌 특산품의 판로확대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77 번지에 두도록 함 (안 제2조)

나.전시 판매장의 기능은 농어촌 특산품의 전시.판매 기능을 담당 하도록 함 (안 제3조)

다.전시.판매 품목은 특산단지의 생산제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제품,농수축산물,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으로 함 (안 제4조)

라.운영은 위탁으로 하며 위탁대상은~지방자치단체.농어촌 특산단지,유관단체등에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마.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 분의 10 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 할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음 (안 제 8조, 9조)

바.관리운영비는 일체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안 제10조)

사.판매장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잇도록 함 (안 제11조)

아.수탁자는 전시 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

지방자치법 제 16조 (규칙)

4. 기타 참고자료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77 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특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2. 농어촌 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해외수출 상담창구 역활
3. 농어촌 특산품의 전시·판매행사등 판촉 및 홍보
4. 농어촌 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5. 농어촌 특산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
6. 기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수행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품
2. 농·축·수·임산물
3.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 특산품
5.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

제5조(운영의 위탁)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기타 도지사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어촌 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등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

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요율의 적용시한) 이 조례 제8조의 사용요율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다시 정 할 수 있다.